

개정건축법시행령 2

◎ 대통령령 제 13,655 호

제9장 보 칙

제 114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법 제 69조 제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제 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시장 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 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116조(손실보상) ①법 제 7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 7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등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 7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6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

3. 법 제 6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
②시·도지사는 법 제 7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③시장은 법 제 7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

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

④시장등은 법 제 7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법 제 1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3. 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 11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법 제 9조·법 제 13조 제 1항·법 제 16조 제 2 항·법 제 18조(착공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제 1항 후단을 제외한다)·법 제 25조·법 제 26조 제 1항·법 제 30조 제 4항·법 제 31조·법 제 34조·법 제 37조·법제 38조·법 제 45조 제 2항(건축물의 형태·색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법 제 47조·법 제 50조·법 제 51조·법 제 53조·법 제 70조·법 제 73조·법 제 74조·법 제 76조·법 제 78조 및 법 제 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 45조 제 2항의 준용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 53조의 준용은 제 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준용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6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저장시설·유통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②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1항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 45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③시장등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 36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종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 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스트 슈트·다락(총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 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광고판의 경우로서 제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면적 : 하나님의 건축물의 각종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 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하나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

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보며, 제 86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시 인접대지경계선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 산정하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광고판의 경우로서 제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칼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층 바닥아래면 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 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 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제 1항 제 5호 다목 또는 제 1항 제 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 10장 벌 칙

제 120조(과태료의 부과) ①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 8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 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 83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제 120 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 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 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조(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제 7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 7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 78조 제 1항 및 제 79조 제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2 내지 별표 7 및 별표 9 내지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6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조 제 1항 제 1호중 “건축법 제 22조의 3” 을 “건축법 제 44조”로 한다.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101조 제 1항 제 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제 1항 제 3호”로 하고, 동조제 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101조 제 1항 제 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제 1항 제 4호”로 하며, 동조제 3호중 “건축법 제 2조 제 5호”를 “건축법 제 2조 제 4호”로 하고, 동조제 6호중 “건축법 제 2조 제 7호”를 “건축법 제 2조 제 6호”로 한다.

제 2조 제 7호중 “건축법 제 2조 제 9호”를 “건축법 제 2조 제 7호”로 하고, 동조제 8호중 “건축법 제 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8호”로 하며, 동조제 9호중 “건축법 제 2조 제 11호”를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10호”로 하고, 동조제 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11호”로 하며, 동조제 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9호”로 한다.

제 4조 제 1항중 “건축법 제 5조”를 “건축법 제 8조”로 하고, “건축법 제 8조”를 “건축법 제 25조”로 한다.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조 제 1항 제 1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 19조 제 4 항 제 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101조 제 1항 제 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제 1항 제 2호”로 하며, 제 32조 제 1항 제 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토지초파이드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3조 제 3호중 “건축법 제 44 조”를 “건축법 제 12조”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1조 제 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6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65조”로 한다.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의 2 제 2항 제 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15조 제 4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27조 제 2항”으로 한다.

⑦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1조 제 1항중 “건축법 제 39조의 2 제 1항” 을 “건축법 제 49조 제 1항”으로 한다.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의 2 제 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3조 제 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89조 제 1항”으로 한다.

제 32조 제 2항 제 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5조 제 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으로 한다.

⑨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 제 1호중 “건축법 제 39조의 2”를 “건축법 제 49조”로 한다.

⑩공동주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2항중 “건축법 제 5조”를 “건축법 제 8조”로 한다.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 제 2호중 “건축법 제 5조”를 “건축법 제 8조”로 한다.

제 17조 제 1항제 3호중 “건축법 제 7조 제 1항” 을 “건축법 제 16조 제 1항 및 제 18조 제 1항”으로 한다.

제 55조 제 1호중 “건축법 제 2조 제 7호”를 “건축법 제 2조 제 6호”로 한다.

⑫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8조 제 1항제 1호중 “건축법 제 39조의 2제 1항”을 “건축법 제 49조 제 1항”으로 한다.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7조 제 1항 제 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⑭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중 “건축법 제 39조의 2”를 “건축법 제 49조”로 한다.

제 21조의 2중 “건축법 제 5조”를 “건축법 제 8조”로 하고 “건축법 제 44조”를 “건축법 제 12조”로 한다.

제 34조 제 2항중 “건축법 제 39조의 2”를 “건축법 제 49조”로 한다.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 제 1항중 “건축법 제 7조 제 4항”을 “건축법 제 18조 제 3항”으로 한다.

⑯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제 6호중 “건축법 제 2조 제 4호”를 “건축법 제 2조 제 3호”로 한다.

제 6조 제 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76조”로 한다.

제 8조 제 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2항 제 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4호”로 한다.

제 11조중 “건축법 제 22조의 3”을 “건축법 제 44조”로 한다.

제 15조 제 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3조 제 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89조 제 1항”으로 하고, 동조 제 5항중 “건축법 제 22조”를 “건축법 제 57조”로 한다.

제 16조를 제 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38조 · 제 39조 및 제 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34조 · 제 35조 및 제 37조”로 한다.

제 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 44조 내지 제 46조” 를 “건축법시행령 제 40조 · 제 42조 · 제 43조”로 한다.

제 29조 제 1항중 “건축법 제 9조의 2제 2항”을 “건축법 제 32조”로 한다.

제 36조 제 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54조”로 한다.

제 37조 제 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1조 제 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93조 제 1항”으로 한다.

제 40조 제 3항중 “건축법 제 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103조”로 하며, 동조 제 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8조의 2”를 “건축법시행령 제 100조”로 한다.

제 56조 제 2항중 “건축법 제 9조 및 동법 제 9조의 2제 1항”을 “건축법 제 30조 및 제 31조 제 1항”으로 한다.

⑰약국 및 의약품등의제조업 · 수입자와판매업의 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4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10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로 한다.

⑱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58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98조”로 하고, 동조 제 5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99조”로 한다.

⑲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1조 제 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 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101조”로 한다.

⑳제 1항 내지 제 19항외에 이 영 시행 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 2조 제 1항 제 13호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다. 공관

2.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으로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

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 일용품(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류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2) 다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3) 이용원 · 미용원 · 일반목욕장 ·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소

(5) 택구장 ·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제2종 균린생활시설

(1) 대중음식점 · 딴방 · 기원

(2) 다과점으로서 제1종 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안마시술소

(4) 정구장 · 헬스크럽 · 볼링장 · 실내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금융업소 · 사무소 · 부동산중개업소 · 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7)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인 제조업 ·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당구장 · 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 · 표구점 · 예능계학원 · 기술계학원(주산 · 부기 · 타자 · 속기 · 경리 · 속셈 · 속독 · 응변 · 변론 · 언어교정 · 컴퓨터에 한한다) · 독서실 · 장의사 · 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균린공공시설

가. 동사무소 · 경찰관파출소 · 소방서 · 우체국 · 전신전화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

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마을공회당 ·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수도장 : 수도원 · 수녀원 · 제실 · 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노유자시설

가.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 · 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 ·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8.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 요양소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 대학 ·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0. 운동시설(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운동장(육상 · 구기 · 볼링 · 수영 · 스케이트 · 로울러스케이트 · 승마 · 사격 · 궁도 · 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균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 사무소 · 신문사 ·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 · 여관 ·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 가족호텔 · 국민호텔 · 해상관광호텔 · 휴양콘도미니엄 · 한국전통호텔

13. 판매시설(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 도 ·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 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상점 : 제4호 가목(1)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14. 위락시설

가. 일반유홍음식점(전문음식점 · 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무도유홍음식점 · 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특수목욕장

다. 당구장 ·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 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15.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음악당 ·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집회장 : 회의장 · 공회장 · 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경마장 ·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6. 전시시설

가. 전시장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기념관 · 산업전시장 ·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동식물원 : 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 · 가공(세탁 · 염색 · 도장 · 표백 · 채봉 · 전조 · 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균린생활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공해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나. 일반공장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18. 참고시설	27. 군사시설	가. 단독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중계 시설을 포함한다)	나. 공동주택
가. 참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기숙사
나. 하역장	다. 활영소	라. 노유자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9. 묘지관련시설	마. 종교시설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화장장	바. 근린공공시설
가. 주유소	나. 납골당	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한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아.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자. 판매시설(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 이 종전의 면적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건축물을 한한다)
라. 위험물저장소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마. 위험물취급소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바. 액화가스취급소		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유독물판매소		다.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
아. 총포판매소		라. 운동시설
20.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철도역사		사. 관람집회시설
다. 공항시설		아. 전시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자. 공장(인쇄·봉제·필립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 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21. 자동차관련시설(종기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차. 창고시설
가. 주차장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
나. 세차장		타. 교정시설
다. 폐차장		파. 자동차관련시설
라. 검사장		하. 동물관련시설
마. 매매장		거.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바. 정비공장		너. 방송·통신시설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더. 군사시설
22. 동물관련시설		러. 청소년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나. 가축시장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동물검역소		
2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24. 식물관련시설		
가. 버섯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제등의 온실		
라. 기타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식물원을 제외한다)		
25. 빌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6. 교정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김화원 기타 범죄자의 생활·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바. 노유자시설
- 사. 균린생활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나. 교육연구시설
 - 다. 운동시설
 - 라. 업무시설
 - 마. 판매시설
 - 바. 관람집회시설
 - 사. 전시시설
 - 아.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 자. 창고시설
 - 차.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카. 자동차관련시설
 - 타. 동물관련시설
 - 파. 식물관련시설
 - 하. 발전소
 - 거. 교정시설
 - 너. 군사시설
 - 더. 방송·통신시설
 - 러. 청소년시설
-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5]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 제1항 제4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균린생활시설
- 나. 균린공공시설
- 다. 종교시설
- 라. 업무시설
- 마. 숙박시설
- 바. 판매시설
- 사. 위락시설
- 아. 관람집회시설
- 자. 전시시설
- 차. 방송·통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 나. 공동주택
- 다. 기숙사
- 라. 노유자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교육연구시설
- 사. 운동시설
- 아. 창고시설
- 자.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차.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카. 운수시설
- 타. 자동차관련시설

파. 청소년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 제1항 제5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기숙사
- 나. 균린생활시설
- 다. 균린공공시설
- 라. 종교시설
- 마. 업무시설
- 바. 숙박시설
- 사. 판매시설
- 아. 위락시설
- 자. 관람집회시설
- 차. 전시시설
- 카. 창고시설
- 타. 의료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 나. 공동주택
- 다. 노유자시설
- 라. 교육연구시설
- 마. 운동시설

- 바.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사.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아. 운수시설
- 자. 자동차관련시설
- 차. 동물관련시설
- 카. 발전소
- 타. 군사시설
- 파. 교정시설
- 하. 관광휴게시설
- 거. 청소년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7]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 제1항 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 나. 기숙사
- 다. 균린생활시설
- 라. 균린공공시설
- 마. 종교시설
-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의료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공동주택
- 나. 노유자시설
- 다. 교육연구시설
- 라. 운동시설
- 마. 업무시설
- 바. 숙박시설
- 사.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아. 위락시설
- 자. 관람집회시설
- 차. 전시시설

- 카.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 타. 창고시설
-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하. 운수시설
- 거. 자동차관련시설
- 너. 동물관련시설
- 더. 발전소
- 러. 방송·통신시설
- 며. 교정시설
- 버. 군사시설
- 서. 청소년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8]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 제1항 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균린공공시설
- 나. 판매시설
- 다. 운수시설
- 라. 창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균린생활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노유자시설

- 라. 위락시설
- 마. 업무시설

- 바. 전시시설
- 사. 관람집회시설

-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자동차관련시설

- 차. 발전소
- 카. 군사시설

- 타. 청소년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9]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1항 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균린생활시설
- 나. 균린공공시설
- 다. 공장
- 라. 창고시설
-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자동차관련시설
- 사.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아. 발전소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운수시설
- 나. 노유자시설
- 다.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 라. 군사시설
- 마. 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 바. 의료시설
- 사. 전시시설(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한다)
- 아. 방송·통신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0]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1항 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균린생활시설
- 나. 균린공공시설
- 다. 공장
- 라. 창고시설
-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자동차관련시설
- 사.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아. 발전소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기숙사
- 다. 종교시설
- 라.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 마. 전기시설
- 바. 운수시설
- 사. 노유자시설
- 아. 방송·통신시설
- 자. 군사시설
- 차. 교정시설
- 카. 청소년시설
- 타. 동물관련시설
- 파. 의료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1]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1항 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기숙사
- 나. 균린생활시설
- 다. 균린공공시설
- 라. 창고시설
-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자동차관련시설
- 사.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아. 발전소
- 자.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 다. 종교시설
- 라. 노유자시설
- 마.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 바. 운동시설
- 사. 업무시설
- 아. 관람집회시설
- 자. 판매시설(농·축·수산물판매시설에 한한다)
- 차. 전시시설
- 카.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 타. 운수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군사시설
- 거. 교정시설
- 너. 청소년시설
- 더. 동물관련시설
- 려. 의료시설
- 며. 묘지관련시설
- 벼. 장례식장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2]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1항 제1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균린공공시설
- 나. 교정시설
- 다. 군사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나. 균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마. 종교시설

바. 전시시설

사.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자. 묘지관련시설

차. 장례식장

카. 청소년시설

타. 의료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3]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 65조 제1항 제12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균린공공시설

나. 노유자시설

다. 의료시설

라. 운동시설

마. 동물관련시설

바. 식물관련시설

사. 교정시설

아. 군사시설

자. 청소년시설

차. 방송·통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균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종교시설

마.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의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바.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사.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음·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아.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자.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차.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카. 묘지관련시설
타. 장례식장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하.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4]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 제1항 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균린공공시설

나. 노유자시설

다. 의료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마. 운동시설

바. 동물관련시설

사. 식물관련시설

아. 묘지관련시설

자. 장례식장

차. 관광휴게시설

카. 교정시설

타. 군사시설

파. 청소년시설

하. 방송·통신시설

거. 분뇨·쓰레기처리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다. 기숙사

라. 균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마. 종교시설

바. 숙박시설

사. 관람집회시설

아. 전시시설

자.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차. 창고시설

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자동차관련시설

파.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

하. 밭전소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제121조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법 제14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법 제18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26조 제1항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도로에 돌출된 건축물	법 제34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7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8조 제1항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피난시설·소화설비 및 통로의 기준이나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거실의 반자높이·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9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8.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9. 방화지구안의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1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0.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42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11.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43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2. 지하층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층을 설치한 건축물	법 제44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위반하거나 공원·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45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4.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뛰어야 할 거리를 뛰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5.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1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6.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3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7.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5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8.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온돌을 설치한 건축물	법 제56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비상급수설비의 규모·기술기준이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8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9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1.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61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2. 특정기구정비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령등·도시계획 또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5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15조 등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